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 변	안 호	
--------	--------	--

제출일자 : 2010. 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구미국가 제5산업단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반영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미시의 건전한 도시발전, 지역 특성 및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이용도 제고와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정비하고 신설하며,
- 상호 보완적인 지역균형개발 유도로 구미시의 미래상을 구현하며 기업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가용 토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구미도시관리 계획 결정(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일부변경 및 신설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

-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행정구역 전역
- 면 적 : 616.25km²
- 기준년도 : 2003년
- 목표연도 : 2015년
- 계획인구 : 500,000명
- 계획기간 : 2003년~2015년

3. 참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16,251,000		616,251,000	100.0
주 거 지 역	계		25,493,586	증) 350,241	25,843,827	4.2
	전용주거	소 계	-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일반주거	소 계	25,008,459		25,358,700	4.1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126,255	증) 350,241	13,476,496	2.2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313,659		10,313,659	1.7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68,545		1,568,545	0.3
	준 주 거 지 역		485,127		485,127	0.1
상 업 지 역	소 계		3,463,297		3,463,297	0.6
	중 심 상 업 지 역		-		-	-
	일 반 상 업 지 역		2,874,910		2,874,910	0.5
	근 린 상 업 지 역		505,387		505,387	0.1
	유 통 상 업 지 역		83,000		83,000	0.0
공 업 지 역	소 계		29,189,498	증) 364,176	29,553,674	4.8
	전 용 공 업 지 역		-		-	-
	일 반 공 업 지 역		26,122,857	증) 359,363	26,482,220	4.3
	준 공 업 지 역		3,066,641	증) 4,813	3,071,454	0.5
녹 지 지 역	소 계		127,514,582	감) 714,417	126,800,165	20.6
	보 전 녹 지 지 역		2,330,494	감) 139	2,330,355	0.4
	생 산 녹 지 지 역		12,399,280	감) 3,062	12,396,218	2.0
	자 연 녹 지 지 역		112,784,808	감) 711,216	112,073,592	18.2
관 리 지 역	소 계		129,339,711	증) 24,210,572	153,550,283	24.9
	관 리 지 역		14,862	감) 14,862	-	-
	보 전 관 리 지 역		59,541,843	증) 19,228,679	78,770,522	12.8
	생 산 관 리 지 역		8,454,804	증) 614,046	9,068,850	1.5
	계 획 관 리 지 역		61,328,202	증) 4,382,709	65,710,911	10.7
농 립 지 역			271,192,595	감) 24,210,572	246,982,023	40.1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30,057,731		30,057,731	4.9

○ 용도지역 변경내용

위 치	변 경 내 용		면적(m ²)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선 산 읍 이 문 리 6 2 2 - 3 일 원	일반공업	1종일반주거	53	국지도 68호선 옥성-선산간 4차로 확포장 및 부채도로 건설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	1종일반주거	1,256	
	자연녹지	일반공업	368	
	자연녹지	준공업	4,813	
	생산녹지	자연녹지	525	
4 공 단 확 장 단 지 일 원	자연녹지	1종일반주거	296,491	4공단 확장단지의 지구계 확장 및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	일반공업	373,865	
	생산녹지	일반공업	2,755	
	보전녹지	일반공업	158	
	1종일반주거	자연녹지	274	
	일반공업	자연녹지	17,512	
	자연녹지	보전녹지	19	
	일반공업	생산녹지	218	
산동면 인덕리 L S 전 선	자연녹지	1종일반주거	52,715	LS전선 기숙사부지 제1종지구 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관 리 지 역 세 분 (미 세 분 지 역)	농림지역	보전관리	19,223,349	보전산지 해제 및 적법훼손지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생산관리	614,046	
		계획관리	4,415,362	
	관리지역	보전관리	14,862	재정비시 미지정으로 남은 관리 지역 세분
	계획관리	농림지역	42,185	산지이용 구분도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
	보전관리	계획관리	9,532	용도지역 현실화

2) 용도지구

구 분		개소	면 적(m ²)	변 경 내 역
자 연 취 락 지 구	당 초	149	7,379,899	
	계 획	신 설	1 증) 51,000	• 괴평3리 마을회관 주변지역 신규 지정
		변 경	4 감) 4,254	• 도로확폭에 따른 변경 3개소 • 기존 취락지구 주변지역 포함 1개소
		폐 지	1 감) 27,331	• 4공단 확장단지 편입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
	변 경 후	149	7,399,314	

3)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면 적(m ²)	변 경 내 역	
제1종 지구단 위 계 획 구 역	66,520	신설 1개소	• LS전선 기숙사(연수시설) 입지에 따른 신설
	1,803,571	폐지 3개소	• 4공단 확장단지 편입에 따른 폐지
제2종 지구단 위 계 획 구 역	100,551	신설 1개소	• 경북문화재자료 제206호 전모레가정 주변지역의 보존·정비로 전통문화의 보전과 역사적 정체성 추구

4) 도시계획시설

구 분	변 경 내 역	
도 로	신설 2개소 변경 5개소	- 경제자유구역 진입로 대로1류 신설 - 공단동~구미시민운동장 연결 대로1류 신설 -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구간 확폭에 따른 변경 5개소
공 원	신설 3개소 변경 2개소	- 양호한 생태계보전 및 낙동강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한 수변공원 3개소 신설 - 공원내 취락지 및 도로확폭에 따른 근린공원 2개소 변경

《참 고 사 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2-2-3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3) 시·군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 ① 도로중 주간선도로
 - ② 철도중 도시철도
 - ③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 ④ 공원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 ⑤ 유통업무설비
 - ⑥ 학교 중 대학
 - ⑦ 운동장
 - ⑧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⑨ 화장장
 - ⑩ 공동묘지
 - ⑪ 납골시설
 - ⑫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 ⑬ 폐기물처리시설
 - ⑭ 수질오염방지시설